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상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0
----------	------

발의년월일 : 2017년 8월 18일

발 의 자 : 조상호, 강감창, 김영한,
김용석(서초), 김인호,
김진철, 맹진영, 문형주,
박운기, 신건택, 이윤희,
이정훈, 최호정 의원(13명)

1. 제안이유

- 직업교육훈련시설은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촉진·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등 사회 및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4개의 직업교육훈련시설의 교육비가 무상으로 운영됨에 따라, 취업의지도 없으면서 여러 군데 기술교육원을 전전하거나,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으면서 교육받는 과정 자체를 목적으로 다니거나, 일정과정의 기술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다른 과정

으로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는 등 기술교육원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음.

- 이 같은 문제점과 피해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바,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직업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생으로부터 교육훈련비·기숙사비 및 식비 등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제1항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6조(교육훈련비 등) ① 시장은 직업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생으로부터 교육훈련비·기숙사비 및 식비 등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6조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③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위탁기관에서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생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학한 경우 훈련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교육생의 입학을 취소하고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교육훈련비 등) ① 시장은 직업 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생으로부터 교육훈련비·기숙사비 및 식비 등 <u>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u> 다만,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위탁기관에서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교육 훈련생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학한 경우 훈련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교육생의 입학을 취소하고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p>	<p>제6조(교육훈련비 등) ① 시장은 직업 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생으로부터 교육훈련비·기숙사비 및 식비 등 <u>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u></p> <p>② <u>제6조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u></p> <p>③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위탁기관에서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